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제 정 1995. 9.
개 정 2012. 10.
개 정 2020. 2.
개 정 2023.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3.)

제2조 (구성 및 임무) 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

제3조 (임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는 총장이 별도의 면직을 하지 않는 한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0.02.06.)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02.06.)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3. 졸업이수학점과 학점체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성적평가제도 및 수업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수업의 질적 향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교육과정의 심의 내용) 제4조1호의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2.06.)

1.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편성 여부
2.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교양인 육성과 학생중심, 학생주도형 교양교육과정 강화 여부
3.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과목 구성 등의 여부
4. 학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여부
5. 졸업기준에 부합하는 이수구분별 학점 편성의 적절성 여부
6. 학기별 편성학점의 적절성 여부
7. 실험·실습 교과목 편성 수 및 학점대비 시수 배분의 적절성 여부
8. 폐강 및 분반 기준 및 관련 사항
9. 기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세부지침의 준수 여부

제5조 (의안발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발의한다.

②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안으

로 발의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

④ 교육과정개편심의는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2.06.)

제7조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 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구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9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3. 우송대학교학칙 개정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② “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제1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교육과정위원회’로 한다.